

##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장학금규정

[시행 2024.11.21] [강릉원주대학교학교규정 제2251호, 2024.11.21, 일부개정]



학생복지과 033-640-1595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」 제49조에 따라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법령 또는 각 장학 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며,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
**제3조(장학금의 재원)** 장학금은 등록금과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발전기금재단, 기업체 및 개인 등이 기탁하는 자원을 재원으로 한다.

## 제2장 장학금의 정의 및 장학생 선발

**제4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교내장학금"은 등록금 등 이 대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2. "교외장학금"은 장학재단 또는 각종 외부 단체 및 개인이 이 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3. "장학생"은 교내·외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는 학생을 말한다.

**제5조(장학생 선발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.

1. 입학시험성적우수자
2. 학업성적우수자
3. 가계가 곤란한 자
4. 각종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
5.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
6.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
7. 장학생 선발 제외 사유가 없는 자

② 이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장학생 대상자에 대해서 총장이 최종 선발 확정한다.

**제6조(수혜기간)** 장학금의 수혜는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7조(장학생 선발 제외)**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한다.

1. 강릉원주대학교 학생활동 및 지도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근신 이상의 징계기간 중인 학생
2. 근신 이상의 징계가 종료된 학기와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(휴학기간은 제외한다.)
  - 가. 근신: 1개 학기
  - 나. 유기정학: 2개 학기
  - 다. 무기정학: 3개 학기

3. 미등록 휴학생
4.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

**제8조(등록금 초과 지급 금지)**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다만,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과 대가 지급 및 포상과 같이 초과 지급이 인정되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

### 제3장 장학위원회

**제9조(설치목적)**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0조(구성)**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한다.

?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처장, 학생복지과장, 지역협력과장, 강릉단과대학행정실장, 원주단과대학행정실장, 대학원행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학생회(비상대책위원회)가 추천하는 재학생 1명과,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4.11.21.>

?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?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학생복지과 장학사무 담당자로 한다.

**제11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
2. 삭제
3. 삭제
2. 장학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12조(회의)**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